의안번호	2221345
의 뢰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6.9.18.
추계번호	26E477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55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219억원(연평균 7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91조의19)	−55	−109	−54	−219	−73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91조의19 (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)	○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– (현행)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(최대 24개월)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–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(최대 24개월)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1조의19 (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

○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별 병역복무 기간[1]을 감안하여 2027년에 가입한 예금주는 2028~2029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가정

- 즉, 2027년 1월~6월 적금 가입자는 18개월 뒤인 2028년 7월~12월에 만기 해지하는 것으로 가정
-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만기 해지자 수, 이자소득금액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가정하에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 동안의 세수효과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전역 후 취업활동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 가입한 자*를 대상으로 복무 중 월 55만원 한도[2] 납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**

*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**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- 소득세: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 14% 원천징수(「소득세법」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)

1) 육군 18개월, 해병대 18개월, 해군 20개월, 공군 21개월, 사회복무요원 21개월
2) 2024년까지 월 최대 40만원

- 농어촌특별세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해 세율 10%로 부과되나(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3조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(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4조제4호)

[표 2]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조세지출 실적: 2019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년 (실적)	2022년 (실적)	2023년 (실적)	2024년 (실적)	2021~2024 연평균 증가율
비과세 이자소득	119.8	128.9	315.5	593.0	70.4
조세지출	16.8	18.0	44.2	83.0	

주: 조세지출액은 비과세 이자소득금액에 이자소득세율(14%)을 적용한 금액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금리(기본금리 5% + 우대금리)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해 1%p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,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(2026년 100%)을 추가로 지원

- (이자) 기본금리인 은행이자율 5%에 추가하여 정부지원분 1% 지원
- (원리금) 납입액에 비례하여 2026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(정부지원분 포함)의 100%를 추가 지원(매칭지원금)

[표 3]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~2026년
납입한도액	40만원	40만원	40만원	55만원
매칭비율	33%	71%	100%	100%

자료: 국방부

(2) 추계 방법

❑ 향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자 수 변화 및 납입한도 확대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자소득금액 추정 후, 해당 이자소득금액에 14%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분 추정

○ 2024년 귀속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실적치에 가입대상자 수 및 평균 납입금액 증가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 추정

- 2022~2024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 수(현역 입영자 수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인원)의 연평균 증가율은 -0.8%로, 이에 따라 향후 적금 가입자 수도 매년 0.8%씩 감소할 것으로 가정
- 2025년 평균 납입금액은 납입한도 인상률(40만원→55만원, 37.5%)만큼 증가하고, 이후에는 2025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2025년(1월~12월) 납입한도 확대에 따른 납입금액 증가 효과는 18개월 뒤인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[3)]
- 은행별 적용금리(기본금리 5% + 우대금리)가 상이하므로 이자율은 2024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2~2024 연평균
현역 입영자[1)]	215,754	186,201	187,188	185,866	186,418
사회복무요원	36,459	30,512	29,991	27,199	29,234
합계	252,213	216,713	217,179	213,065	215,652
(증가율)	(7.0)	(-14.1)	(0.2)	(-1.9)	(-0.8)

주: 1.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인 대체복무요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
1) 징집 및 모집 입영자를 의미하며, 징집인원은 육군 징집병, 상근예비역(육군, 해군, 해병)을 포함
자료: 병무청, 병무통계연보

[표 5]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조세지출액 추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
비과세 이자소득	788	782	775
조세지출	110	109	108

주: 조세지출액은 비과세 이자소득금액 추정치에 이자소득세율(14%)을 적용하여 산출

(3)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55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219억원(연평균 7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3) 연중 12개월동안 만기 해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

○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7년 1~6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신규 가입한 자는 2028년 7월~12월에 적금이 만기 해지되므로, 2028년 세수효과는 연간 조세지출액의 50%만 반영

[표 6]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91조의19)	-55	-109	-54	-219	-73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